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 (제 회)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제연합(UN)이 ‘앙골라’에 대해 최빈개발도상국 적용시한을 연장함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의 별표1에서 ‘앙골라’의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연장*

* (현행)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1년 2월 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개정)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년 2월 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생략

2) 입법예고(2021. 3. 16. ~ 4. 8.)

대통령령 제 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1년 2월 12일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팀	
연 락 처	(044) 215 - 4467